

9. 建設業界懇談會開催

○ 간담회 개요

- 일시 : '91.6.21(금) 16:00
- 장소 : 건설회관 3층 회의실
- 참석 : 건설부 : 건설경제국장 및 관계 과장
협 회 : 상임임원 각 1명
업 계 : 일반건설업체 : 10명
전문건설업체 : 10명
설비공사업체 : 6명

○ 간담회 내용

- 건설부 당부사항
 - 새질서, 새생활운동 실천
 - 건설공사현장 관리철저
 - 여성인력 활용제고
- 공지사항
 - 건설기능공 사기진작 방안
 - 군보충역 활용방안
 - 북방관련업무 처리지침 교육계획
- 업계 애로 및 건의

업계 애로 및 건의

제 목	건의 내용
<p>1.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른 의견</p> <p>가. 자금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 확대 ○ 공영개발 주택대금 납부기간 연장 <p>나. 주택건설기간 연장</p> <p>다. 시공중 공사의 중단 또는 연기에 따른 간접비 보전</p> <p>2. 주요 건설자재 수급 안정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환사채는 5개 신도시개발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만 발행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도 발행허용(주택상환사채 발행지침상 전국에서 발행가능하나 신도시지역 이외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기피로 사실상 불가) ○ 업계는 신도시 등 공영개발 택지대금의 약 70%인 3조원을 선납하였으나, 매입자의 중도금 납부부진으로 1조 9천억원이 아직 미수된 상태임에도 잔금 8,800억원의 추가 납입시기가 도래되고 있으므로 선수 협약된 대지대금(잔금) 납부기한을 당해 택지의 주택분양가로 연장 요망(분양 지연으로 자금회수가 지연되어 기납부 선수금의 회입기간 장기화) ○ 분양개시일로부터 10개월, 10층 초과시 1층마다 45일을 가산(15층 기준 17.5개월)하고 있는 주택건설기간을 분양계약일로부터 14개월, 10층 초과시 1층마다 60일을 가산토록 연장 요망(인력, 자재확보난으로 공기내 준공불가) ○ 시공중인 공공개발공사의 공기연장으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각종 간접비 부담의 추가발생에 따른 실비보상 요망(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 ○ 주요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5·3건설경기 진정대책추진과 시멘트, 철근 수입확대 등 다각적인 건설자재 원활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아직도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 건설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제 목	건의 내용
3. 부대입찰제 의무화	○ 현행 건설업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대입찰제도를 일정규모 이상(예, 10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화하여 하도급계열화 촉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능력제고, 원·하도급자간에 대등한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4. 건설업발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조속한 제도개선	○ 정부관련부처와 건설기관단체로 구성된 건설업발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건설업의 당면과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설관련제도의 연구·발전
5. 해외건설업 면허기준 개선	○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사업자도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현행 면허기준 개선 요망
6. 주택난방설비공사 일원화	○ 건설업법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사업자가 주택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할 경우 연탄 및 기름용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관된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업법령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개정요망